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태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 87
----------	-----------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10일

발 의 자 김태계 · 양정희 · 김진구
황숙경 · 이수현 의원(5인)

1. 제정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관련법규

-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2023. 10. 10. ~ 2023. 10. 16.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

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

2.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품을 지원 받은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래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자			
안 치 장 소				
장 례 수 행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례수행자				
	지원 한도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관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공영장례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800천 원
- 2024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예산 (시비 50%, 구비 50%)
 - (구비) 400,000원 x 56명 = 22,4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이옥경